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전수곤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19년 5월 일
발 의 자 : 김영래, 배재만, 김경호, 김성우, 도희재, 황숙희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2015.10.26.)에 따라 겸직신고 규정 구체화 및 영리거래 금지의 적극 운영을 통한 투명성 제고와 지방의회 신뢰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겸직신고 기한 및 서식 등 규정 구체화 (안 제5조)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안 제6조)
다. 영리목적 거래 및 관리인 등 겸직 금지 (안 제7조)
라.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강화(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나. 기 타 : 조례안예고(2019. 5. 8 ~ 2019. 5. 17)

4. 개정조례안 : 붙임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성주군의회의원 (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성주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성주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성주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2】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성주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성주군과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성주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실천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우리는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에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 있는 대변자로서 우리의 모든 공적행위에 대하여 군민에게 분명한 책임을 진다.

【별표2】 징계기준(제8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별지제1호서식】

<table>
<tr><td colspan="2">연번</td><td></td><td colspan="4">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td></tr>
<tr><td colspan="6">성주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td></tr>
<tr><td colspan="2">소속정당</td><td></td><td rowspan="3">선거구분</td><td>지 역 구</td><td></td></tr>
<tr><td rowspan="3">성명</td><td>한 글</td><td></td><td>비례대표</td><td></td></tr>
<tr><td>한 자</td><td></td><td colspan="2">생년월일</td><td></td></tr>
<tr><td rowspan="9">겸직내용</td><td>기관·단체명</td><td colspan="4"></td></tr>
<tr><td>직 위</td><td></td><td>기간</td><td colspan="2">~</td></tr>
<tr><td>수행업무내역</td><td colspan="4"></td></tr>
<tr><td>분 야</td><td colspan="4">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td></tr>
<tr><td>영리성 여부</td><td colspan="4">영리 □, 비영리 □</td></tr>
<tr><td>보수수령 여부</td><td colspan="4">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td></tr>
<tr><td rowspan="3">보수
수령액
(연간)</td><td>근로소득</td><td colspan="3">원</td></tr>
<tr><td>근로소득 이외 소득</td><td colspan="3">원</td></tr>
<tr><td>계</td><td colspan="3">원</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colspan="6">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인)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td></tr>
</table>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인)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table>
<tr><td colspan="10">성주군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td></tr>
<tr><td colspan="2">성 명</td><td colspan="3"></td><td>생년월일</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 rowspan="4">수의계약체결제한관련자</td><td colspan="8">총 명</td></tr>
<tr><td colspan="4">본인 관련자 명</td><td colspan="4">본인, 직계존·비속 명</td></tr>
<tr><td colspan="2" rowspan="2">배우자 관련자 명</td><td>유</td><td colspan="4">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td></tr>
<tr><td>무</td><td colspan="4">-</td></tr>
<tr><td>연번</td><td>관계</td><td>성 명</td><td>생년월일</td><td>사업자명(상호, 법인명)</td><td>대표자</td><td>사업자 등록번호</td><td>사업장 소재지</td><td>지분율</td><td>기타</td></tr>
<tr><td>1</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2</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3</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4</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5</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6</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7</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8</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9</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10</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10">※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td></tr>
<tr><td colspan="10">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성주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인)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td></tr>
</table>